

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신청하세요!

농림축산식품부

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닭, 오리(종계, 종오리, 부화장 포함) 허가를 받은 자는 2019.8.31일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. 정부의 CCTV 및 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으니 희망자께서는 한국오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또는 관할 시군 축산과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보조 30%, 지방비 30%, 용자 30%, 자부담 10%)

1. 목적

- 가금 사육농가에 CCTV 설치 지원을 통해 영상기록물을 활용해 임상증상 관찰로 조기 신고 유도과 농가 및 출입자(차량)의 소독 등 평소 방역실태 등을 평가 및 점검의 효율적 추진으로 고병원성 AI 등 가금 질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
-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을 차단을 통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최소화를 위한

2. 근거법령

-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(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)

3. 사업대상자

가. CCTV 지원사업

- 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* 또는 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와 위탁 계약한 계열화사업자** (계약 사육농가 지원에 한함)

– 가금 축사는 건축물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 형태도 포함

* 농가 :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농가에 한함(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)

** 계열화사업자 : 계열화사업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금 계열화사업자

나. 방역시설 및 장비

- 가축사육업(가금·양돈)의 허가를 받은 농가(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)

4. 지원대상 자격 및 요건

<가금사육농가>

-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33조의4에 따른 AI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포함된 가금 사육농가
- 정부 가축 사육제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금농가
- 위탁 계약한 가금 농가에 대하여 방역위생 관리를 스스로 하고자 하는 가금 계열화 사업자(계약사육농가 지원에 한함)
- 지자체 등의 AI 방역추진을 위한 '방역시설 취약 가금농가로 분류된 농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으로 제출한 가금 사육농가

<지원 제외>

- 이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CCTV 설치를 포함한 지원을 받은 경우
- 위탁 계약농가의 CCTV 설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계열화사업자
-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(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)

5. 지원사업별 대상 및 내역

① CCTV 설치

가. 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(축사를 임차한 경우도 포함)

- 지원내역 : 영상보안시스템(네트워크구축*, CCTV설치, 모니터, 영상저장장치 등)
 - * 농가자체스마트폰 활용등을 추가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말함
 - ※ 계열화사업자와 위탁 계약한 농가의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지원 신청 가능

나. 계열화사업자와 위탁 계약농가

- 지원내역
 - 영상보안시스템(네트워크구축, CCTV설치, 모니터, 영상저장장치 등)
 - 환경감시시스템(온·습도 감지기, 정전·화재 감지기 등)
 - 통제관제시스템(영상모니터, 프로그램 솔루션, 휴대폰 앱 등)
 - ※ 영상보안시스템과 환경감시시스템은 위탁 계약농장, 통제관제시스템은 계열화사업자에 지원(다만, 위탁 계약농가의 설치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함)
-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농가 당 상기 지원내역의 3종 시스템을 일건으로 추진 하되 지자체 보조금 지원은 수혜를 받는 지자체(농장 소재 지자체)에서 지원

다. 지자체는 사업대상자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CCTV 장비와 연관되어 방역에 활용할 목적으로 기타 장비를 구비하려는 경우 실질적으로 방역개선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 판단

② 방역시설 및 장비

- 지원 가능한 방역 시설·장비 : 울타리, 전실, 차량 세척·소독 시설·장비, 대인 소독 시설·장비, 방역실, 야생조수류 차단(그물망 등) 시설·장비, 야생조류 퇴치기, 소석회 살포기 등

6.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준수사항

<지원형태>

- 국고 보조 30%, 지방 보조 30%, 융자 30%*, 자부담 10%
 - * 융자 30%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(융자금리 : 연리 2%,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)
- 대출취급기관 : 농협은행(농·축협 포함)
- 사업주관기관 :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·구청장)

<농가·지자체 확인사항>

- 지원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농가 또는 계열사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므로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(사업대상지 선정 무효) 조치

<사업 의무준수사항>

① CCTV 설치

- CCTV 사양 : 일반적인 축사 내 환경에서 영상기록이 가능한 수준
 - 45일간 영상 기록 가능(축사내 CCTV는 21일간 이상)
 - 200만 화소 이상
 - 축사 내에서 촬영이 가능
 - 주야간 모드 변경 가능
 - 야간 가시거리(15~20m) 이상 확보 가능
 - 농장 출입구 설치 카메라는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
- CCTV 설치 장소 : 농장 출입구*와 축사별 입구**에 설치
 - * 농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CCTV는 외부 차량 및 사람·소독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
 - ** 축사별 입구에 설치되는 CCTV는 가급적 축사내부의 가금상태를 함께 볼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.
- CCTV 영상기록을 최소 45일 이상 저장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(축사 내 CCTV는 21일간 이상)

- 위탁농가와 계약한 계열화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제관계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, 해당 시스템을 인터넷 등을 통해 관할 지자체 등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.(계열화사업자가 신청시에 반드시 계약농가와 사전 설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)
- 가금 농장 및 계열화사업자가 저장한 영상기록 등은 가축방역관이 가축방역상 점검 및 지도를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.
- 농장주는 CCTV 영상기록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방역시설 및 장비

- 방역시설 및 장비 설치 시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와 관련된 질병을 차단하기에 적합한 재질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 - (방역실) 동절기 및 우천 시 장화 갈아신기와 신발 소독이 가능한 형태와 크기를 자유로이 설치 가능(소독실, 샤워실 등 추가 가능)
 - (전실) 축사 전실은 AI 긴급행동지침의 재입식을 위한 전실 설치기준을 참고하여 설치
 - (그물망) 새 그물망은 격자 크기는 야생조수류가 침입하지 않은 크기인 $2 \times 2\text{cm}^2$ 이하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설치
 - (울타리) 양돈농가는 야생멧돼지 등의 농가 내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재질 등으로 설치

7. 지원상한액 기준 및 범위

- 농가당 표준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. 단, CCTV의 경우, 지원상한액(표준사업비의 10%)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이 가능함
- “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” 사업을 재차 지원 받는 농가는 지원 상한액에서 기 지원액을 감한 액수를 지원 상한액으로 간주*(단,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상한액 산정과 무관)

(예) 방역시설 개선을 위해 2천 만 원을 이미 지원받은 오리농가는 다음 해 지원받는 경우 지원 상한액은 3천 만 원임

<지원 단가>

구분	지원 항목	농가당 표준사업비
CCTV	영상보안시스템	5,000천원
	환경감시시스템	5,000천원
	통제관계시스템	6,600천원
방역시설 및 장비	울타리, 전실, 차량 세척 소독 시설 장비, 대인소독 시설 장비, 방역실, 야생조수류 차단 그물망, 야생조류 퇴치기, 소석회 살포기 등	50,000천원

붙임 1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
1. 수집 개인정보 항목

- 수집항목 : 대표자명(법인명)·농장명·연락처(주택, 휴대전화)·주소 (집주소, 농장주소)·축산업허가(등록)증 고유번호(농장식별번호) 등
- 개인정보 수집방법 : 사업신청서, 사후관리 조사서

2. 수집 및 이용 목적

-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
- 사업 정보 전달,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

3. 보유 및 이용기간

-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,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5년까지 보유 활용

4. 제공 받는자

- 사업총괄기관 : 농림축산식품부(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)
- 사업시행기관 : 해당 시·도(시·군·구) 지자체
-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: 해당 시·도(시·군·구) 지자체
- FTA기금관리기관 : 농수산물유통공사(FTA기금팀)
- 대출취급기관 : 농협경제지주

5.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

- 위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,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6.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

-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,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/타기업/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.

본인은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,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일

사업장 명칭 _____ 성명 _____ (서명 또는 인)

○○○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▶사업신청서 제출 시 별첨자료 목록**〈가금 농가용 필수 첨부자료〉**

1. 사업계획서
 2. 축산업허가증 또는 계열화사업자 등록증
 3. 신용조사서 (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)(융자신청이 있는경우에 한함)
 4.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)
 5. 사업부지 등기부등본
 6. 건축물관리대장(사업대상 건물)
- ※ 계열화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4호, 5호 및 6호는 제외

〈계열화사업자용 필수 첨부자료〉

1. 사업계획서
2. 축산업허가증 또는 계열화사업자 등록증
3. 신용조사서 (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)
4.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)
5. 사업부지 등기부등본
6. 건축물관리대장(사업대상 건물)
7. 농가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대상자 동의서

